•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794호 2014. 3. 3.(월)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817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81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35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3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8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5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80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4-21호(지적기준점 성과고시) …… 109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4-201호(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10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4-203호(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116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4-203호(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2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4-22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32

회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공공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 급속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조직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직속기관(보건소) 내 송도보건지소 신설 - 신 설 : 송도보건지소 (안 제8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4.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81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장 등) ①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table>
<tr><th>제 명</th><th>주 요 내 용</th></tr>
<tr><td>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td><td>

□ 개정 이유

○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책사무 분야 증원 및 공공의료시설인 송도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증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인력 증원으로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 : 641명 ➡ 658명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부 변경 [안 별표 3]

<table>
<tr><th rowspan="2">직 급</th><th colspan="2">정</th></tr>
<tr><th>현정원</th><th>조정정원</th></tr>
<tr><td>총정원</td><td>641</td><td>658</td></tr>
<tr><td>구청장</td><td>1</td><td>1</td></tr>
<tr><td>일반직계</td><td>640</td><td>657</td></tr>
<tr><td>4급이상</td><td>5</td><td>5</td></tr>
<tr><td>5급</td><td>45</td><td>47</td></tr>
<tr><td>6급이하</td><td>590</td><td>605</td></tr>
</table>

</td></tr>
</table>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4.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81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58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집 행 기 관 : 642명
2. 의회사무기구 : 16명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집 행 기 관					의회사무 기 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58	642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57	641					16
3급	1	1	1				
4급	4	4	3	1			
5급	47	44	24	7	1	12	3
6급이하	605	592					13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table>
<tr><th>제 명</th><th>주 요 내 용</th></tr>
<tr><td>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td><td>

□ 개정 이유

○ 송도국제도시의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관련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기구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급과 분장사무 정비

○ 신 설 : 송도보건지소

⇒ 안 제9조, 제10조

나. 사무분장표(별표1,2,3) 일부내용 수정

⇒ 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table>
<tr><th>신규(인수) 사무</th><th>부서이동</th></tr>
<tr><td>· 자체평가 및 국정시책 연계 군· 구 평가 총괄 관리</td><td>· 감사실 ⇒ 기획예산실</td></tr>
<tr><td>· 계약심사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td><td>· 재무회계과 ⇒ 감사실</td></tr>
<tr><td>· 아파트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td><td>· 교통행정과 ⇒ 건축과</td></tr>
<tr><td>·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td><td>· 총무과 ⇒ 안전관리과</td></tr>
<tr><td>· 지역사회연계, 재활보건, 감염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방문건강관리,예방,접종,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td><td>· 송도보건지소(신설)</td></tr>
</table>

</td></tr>
</table>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4.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3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장ㆍ과장ㆍ지소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송도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분장사무) 보건소 및 송도보건지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2” 와 같다.

별표 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장·과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소장 · 과장 · 지소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송도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10조(분장사무)** 보건소 및 송도보건지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별표 1】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8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관리 6. 위원회 관리 7.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정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0. 당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 확대간부 회의 12.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8.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9.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20.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21. 인천 신항 관련사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3. 국고 및 시비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세출예산의 변경(전용, 이체, 이용, 변경 등) 사용에 관한 사항 25.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6. 예산의(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7. 교부세,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28.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30.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관한 사항 31. 재정전망 분석 및 제도 연구 발전 32. 지방채무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기금 운영 총괄 조정 · 관리 34. 주민재정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5.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6. 용역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37. 예산절감 대책 및 건전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38.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9.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0.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사항 41.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42.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3.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사항 44.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 개정,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5. 고시, 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6.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47.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8.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9.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0.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1.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2.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3.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54.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55. 구 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56.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7. 국정시책 연계 군·구 평가 총괄 관리 58.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확인 및 구민불편사항 확인 평가 59. 외부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총괄적인 업무) 60. 7대 당면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감 사 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청원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클린신고센터 운영 12.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1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4.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5. 청렴도 관련 업무 16. 청탁등록 센터 운영 17. 물품구매·제조, 용역사업,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8. 계약심사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9. 원가계산 능력 배양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실	1.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언론 구청장 인터뷰 및 홍보에 관한 부서요구사항 검토 6.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보존 관리, 배부 7. 구정 홍보물(화보·소식지·영상물·뉴스 제작 등) 발행 배부 8. 홍보·미디어 메커니즘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9. 구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11.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13. 스튜디오, 인터넷방송실, 구정홍보실, VTR실, 사진실, 기자실 운영 14. 국어책임관제 운영 및 국어사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 구정홍보계획의 총괄 16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사항 유지·관리 18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관한사항 19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전산장비(PC, 프린터, 스캐너 등)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주전산기(공통기반서버, KLIS서버 등) 및 각종서버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구간)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25. 네트워크장비(백본, 라우터 등)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7. 정보보호시스템(VPN, F/W, IPS, 유해차단 등) 구축 및 운영관리 28. U-컨텐츠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29. 무선인터넷(Wifi)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정품 SW 및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실	31. 구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2.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3. 통계자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4. 각종 통계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사업체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의식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날 지원 및 구민상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직, 직원복무 및 청사방호(청원경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6.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녀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장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 본청 책이랑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경일 등 태극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 16. 직장 민방위 및 자체 예비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7.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직원 및 간부공무원 비상연락(소집)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상용직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24. 청원경찰 임용에 관한 사항 25.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6.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7.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현원관리에 관한 사항 28.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공무원 시책교육 포함)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30. 공무원 임용시험 요구, 특별임용 및 전직시험 관련 사항 31. 공무원증 발급, 재직 ·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2. 공무원 건강진단 및 4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33.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35. 공무원표창에 관한 사항 36.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7.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8.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9. 사회단체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1.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구 행정실적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43.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44.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 육성에 관한 사항 45. 새마을 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 46. 시장 및 구청장 초도방문에 관한 사항 47. 여론 및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48.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9. 주요시책 및 당면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0.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1. 북한이탈주민 보호 · 관리에 관한 사항 5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3.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 5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55.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56. 행정구역의 위치 · 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57. 동 주민센터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58.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59.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0. 반상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61. 통 · 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62.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6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64.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65. 인권보장 및 증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6. 그 밖에 자치행정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지원과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 ·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3.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1.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금요예술무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7. 연수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공원의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사항 9.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관광편의시설업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관광숙박업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1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4. 종합휴양업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15.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16.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7. 영화관 등록 및 상영에 관한 사항 18.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19.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항 사항 2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용담공원 내 씨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스포츠바우처 사업 일반에 대한 사항 23.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신고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한 영업의 신고·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무회계과	1. 회계문서 심사 및 구 사업소 동 회계문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계관리 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원천징수금 징수 불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부가가치세 불입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 7. 국비, 시비 정리에 관한 사항 8. 회계관계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10. 구금고의 세출분야 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2. 급여압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4.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영선관리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업무 18. 구청사 및 동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 19. 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송죽원 포함) 20. 구 청사 소방에 관한 사항 21. 공용의 청사,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등에 관한 설계 및 공사시공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경로당 포함) 22. 대강당·대회의실·예식장 대관에 관한 사항(사용신청(승인) 및 사용료부과(징수)) 23. 사무실 배치·조정에 관한 사항 24.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서 전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운영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납세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9.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12.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및 가산금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교부청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징수분야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7.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18.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9. 구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세무전산화 추진운영 21.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23.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4.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25.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6. 토지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27. 토지 잠정등급 발급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취득세 수납사항 대사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30.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3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사항 33.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에 대한 사항 34.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5.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6.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에 관한 사항 3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에 관한 사항 38. 개별주택가격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재 산정 등에 관한 사항 39.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환급 40.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41. 지방소득세 대장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1. 각종문서 수발·분류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어디서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 24” 처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친절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외부고객만족(CS) 행정에 관한 사항 15. 미추홀 콜센터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공개 접수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기록물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2. 종합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23. 기록물 관리 업무 지도 ·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25.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6.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7.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28. 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29. 결격사유조회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30. 인감증명관리에 관한 사항 31.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3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3.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3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5.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파악에 관한 사항 36. 개발부담금 조사· 산정에 관한 사항 37.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39.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0.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4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42.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4. 이동지 검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5. KLIS시스템 토지이동정리 46.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47.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 48.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9.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50. 지적기준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1. 축척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 5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관한 사항 5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사항 54.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 5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56.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57.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리 58.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59. 새주소 정착 및 활용 홍보 60. 도로명주소 고지 · 고시에 관한 사항 61.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62.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63. 신고서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64. 가격적정서 진단, 세부자료입력에 관한 사항 65.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에 관한 사항 66.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 67.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8. 지적전산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업무에 관한 사항 6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70.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 71. 토지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7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7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74.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75.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6. 토지거래계약허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77. 토지거래계약허가 소송수행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78.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79.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사항 80.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81.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82. 국가소송(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 83. 지적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조상땅 찾아주기) 8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85. 부동산거래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시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보훈단체지원·협력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 및 결산 총괄 9.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 감독 11.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에 관한 사항 13. 행려자·사망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17.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8.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9. 이웃돕기 지원 및 관리·후원 결연에 관한 사항 20.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관협력복지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투자사업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25. 연수품앗이 운영 및 관리 26. 사례관리 운영 및 자원에 관한 사항 2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연계 30. 그 밖에 복지경제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급여지급 관리 전반 사항 3.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에 따른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5.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차상위계층 등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9. 차상위계층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4. 의료급여 사후관리(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환수결정내역,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 17. 의료급여 사례 관리 18. 의료급여 제한 여부 조사 및 상해요인, 중복청구 조사 19.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관리 20.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관리 2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2. 장애인보장구 지원 관리 23.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허가·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30. 장애인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37.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38.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항 39.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1.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3.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보수에 관한 사항 46.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7. 노인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8. 노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9.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0.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1. 장사 등에 관한 사항 52. 외국인묘지 처리(매장·개장·유실 등)에 관한 사항 53. 노인 일자리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4.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5.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6.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7. 자활사업 프로그램 실시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58. 자활공동체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9.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60.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1.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2. 차상위 일자리지원 사업 63. 자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64.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65.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7.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68.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가정복지과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여성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7.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8.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연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7. 출산장려금 지원 및 다자녀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9.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 21.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2.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급여지급 사항 2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구립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5.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6.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7.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가정복지과	29.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급여 지급 사항 30. 시소와 그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에 관한 사항 33.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6.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37.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8.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9.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0.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41.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2.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3.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44.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5.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46.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8.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9.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0.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51. 드림스타트 사업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52.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 조정·연계 및 개발 53. 드림스타트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후원기관 선정 및 관리 54.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5.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6. 드림스타트 사업 민간 전문인력 관리 및 슈퍼비전 체계 운영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출 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업무 8.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4. 양정에 관한 사항 15.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6. 농림 축 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8.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20.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1. 농지원부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2.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23.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 2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경증명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26.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7.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어선표지판 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 29. 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30. 어선등록말소 신청 및 어업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 31.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32. 선박원부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 33.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34. 어선 건·개조 발주에 관한 사항 35. 낚시어업신고에 관한 사항 36.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사항 37.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39. 축산물 등급제 지도에 관한 사항 40.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1. 축산물보관업 허가에 관한 사항 42.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43. 축산식품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4.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5.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46.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47.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48.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9. 농업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0.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51.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2.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53. 수출농식품 지원에 관한 사항 54.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55.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6.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57.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8. 농·수·축산물 가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59.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60.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61. 대부업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2.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3. 복권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4.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65. 개인서비스업 조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66.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7. 상권활성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8. 지역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 69. 상점가 진흥조합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70. 유통상생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7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73. 석유사업법에 관한 사항 74.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 75. 석유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7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임에 관한 사항 77.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8. 계량기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79.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80. 기계 및 섬유공업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81. 지역 상공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82.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3.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4.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5. 공예품 등 전문 생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86. 토산품 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 보호에 관한 사항 87.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88. 공장등록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89.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0.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91.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92. 그 밖에 상공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93.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4. 가스안전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9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사항 97.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사항 98.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9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0.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1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2.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및 원산지표시관련 업무 10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04. 중소기업 창업지도에 관한 사항 105. 승강기에 관한 사항 10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7.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 108. 공공기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109. 유료광고 조례에 관한 사항 110. 담배 도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111.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112.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113.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14.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5. 노동대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6. 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사항 117. 창업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8.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수요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9.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20.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121.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12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23. 지방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일자리창출과	1.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 3. 지역브랜드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4.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업연계형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7. 연수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고용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인·구직의 개척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구인· 구직 등록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6. 구인·구직 만남의 날(취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17.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18.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0. 직업소개 사업자 및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기업 교육 및 홍보사업 23.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24.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25. 협동조합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26.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마을기업 육성사업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적환장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료 및 전반적인 관련 사항 11.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1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에 관한 사항 15.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기본적 처리증명 16.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18.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 처리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23.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5. 1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6.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28. 재활용센터 관리 29.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30.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31. 환경(청소)순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3. 처리업체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관리과	1.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업소(이·미용, 숙박, 목욕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관련업(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신고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중·식품위생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식품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11.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13. 식품접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4. 식품관련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1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식품품목보고(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17. 식품소분업·판매업·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9.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0.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21.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22. 식품동원(충무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23. 음식문화 개선사업(특색음식거리 지정, 맛있는 집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4. 좋은 식단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6.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관리과	29. 공중·식품 무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0. 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1.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2. 공중위생업소 등급선정에 관한 사항 33.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공중·식품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 35. 공중·식품 위생업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6. 공중·식품 위생업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7.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삭제) 38.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9.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압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1. 집단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3.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4.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6.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7.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8. 고열량, 저영양 식품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4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0.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 51.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 및 이물 민원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52. 식품생산자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 53.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54.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55.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2.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 (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5.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6.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17. 20미터 이하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로의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20.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22.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3. 지하차도(보도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7. 공동구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29.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로 및 가로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1.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3.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34.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5.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6. 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7.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8.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39.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40.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1.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2.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3.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4.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5.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자전거 행사에 관한 사항 47. 자전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8.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9. 무단방치자전거 정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2.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3.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4.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55.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사항 56.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7. 도시환경국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1. 건축물 등기필 정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말소 및 공용발급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6.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항측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3.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7. 옹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18.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 · 재개발에 관한 사항 20. 시설(건물, 토지)동원에 관한 사항 21.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22.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7.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8. 임대주택 분양전환허가 및 매각신고에 관한사항 29.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30.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1.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2.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 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사항 34.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35.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6. 간단한 도면 대행 서비스에 관한 사항 37.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 38. 공동주택 하자보수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39. 아파트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1.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 8.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9.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10.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포함) 20.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2.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3. 환지 증명원(예정지, 확정) 발급에 관한 사항 24.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5. 온천 개발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토지이용 및 시설제한에 관한 사항 4.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유공자포상계획수립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배출원 및 전국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3.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배출업소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15. 한강중역권 물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내의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9. 중수도 등에 관한 사항 20. 환경기술인 및 다중이용시설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21. 습지관리보호지역에 관한 사항(내륙·연안 포함) 22.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23.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24.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5. 정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일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30. 저탄소 녹색통장(탄소포인트)갖기 추진에 관한 사항 3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녹색생활 업무에 관한 사항 3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사항 33. 녹색생활 확산 및 시민실천 정착화 업무에 관한 사항 34.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5. 옥상농업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6.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본격추진에 관한 사항 37.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8.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9.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0.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1. 무허가·신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항 42.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3.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4. 생활소음, 생활악취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45.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46.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47.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48. 자동차정밀검사 체납 과태료 징수·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49. 유해화학물질등록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0.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1. 저수조 청소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2.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3.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다중이용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 55.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6. 환경오염신고 “128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57.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58. 악취, 먼지, 오존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9. 환경사범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60. 대기· 수질 TMS구축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61. 민간 환경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 62.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3. 환경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4. 폐석면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5.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6.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7.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68.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9.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0.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2.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에 관한 사항 73.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5. 빗물이용이설의 설치·관리 7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77.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78. GCF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1.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영림계획의 인가, 변경명령 및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대책 및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8.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입산신고에 관한 사항 11. 지역 공동산화경방활동에 관한 사항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3.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녹화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7. 구 단위 도시녹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화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19.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20. 보행자전용도로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1. 미관광장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2.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마을쉼터 조성 및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24.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25. 교통섬 녹화 및 가로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26. 도시림 조성 및 관리 27.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위탁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29.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 및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30.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 31.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32. 도시공원 및 녹지 협의 관련 사항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단, 미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처리 되어야할 부분은 제외한다.) 34. 도시공원, 녹지 GIS(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5.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6. 공원 재조성(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7. 공원내 체육시설의 설치·개보수(증축)·변경, 리모델링,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38. 도시공원, 녹지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39.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40.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 42.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사항 43.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 44.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46.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및 관리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48. 도시공원 및 녹지 공원 등 전기업무에 전반에 관한 사항 49.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화장실 관리 51. 도시공원 및 녹지내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52. 소나무류의 이동에 따른 허가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53. 연수둘레길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4. 등산로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55. 산림의 생태적 복원에 관한 사항 5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57. 보안림의 지정, 지정해제, 지정의 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 58. 도시계획시설(공원: 묘지공원 제외, 녹지, 일반·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5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 기준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신규로 증가된 근린공원 종합계획 및 공원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61. 아암도 해안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3. 교통관련 소규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1.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12.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4.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9.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0. 차 없는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22.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사항 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4.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5.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26.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2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등(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제외) 31.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고발,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32.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3.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고발에 관한 사항 34.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및 가입사실 증명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35.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이한 의견 제출 통보 및 과태료 감경 부과에 관한 사항 36.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37.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관리 39. Green Parking 사업에 관한 사항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41. 무단방치 자동차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42.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차량민원과	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시간제 계약직·교통서포터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정형·차량형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교통불편민원 상담 5. 주정차위반 단속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견인사업소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등록 원부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신규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등록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멸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변경등록 · 이전등록 ·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신규등록 19. 자동차 등록증 교부 20. 자동차 경정등록 21. 자동차 저당권 변경 · 등록 · 말소 22.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24. 이륜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25.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26. (과년도)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7. (과년도) 체납 주정차과태료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차량민원과	28. (과년도) 체납 검사지연 등록지연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9. 위 26. 27. 28.호와 관련한 압류·해제 30.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압류 및 해제등록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29.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0.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31.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재난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33. 방범취약지 야간 순찰에 관한 사항 3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35.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3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38.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39.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40. 재난안전교육 총괄 및 훈련, 홍보 41. 민방위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4. 핵 및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 45. 민방위 및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46. 충무계획 작성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47.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48. 인력동원 실제 훈련에 관한 사항 49.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50. 민방위 재난 통제에 관한 사항 51.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2. 주민신고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3. 민방위대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54. 민방위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5. 공익근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56. 그 밖에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인적재난의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10.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총괄 11.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12.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6.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7.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풍수해보험 가입·운영에 관한 사항 20.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2. 재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5.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6.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7.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57.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8.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9. 행정정보통신시스템(교환기, 인터넷방송시스템, 전광판, 콜센터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0. 방송시설 운영 및 행사(방송)지원에 관한 사항 61.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62.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 63.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4.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분야) 65. U-City건설 종합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6. Smart 연수 건설(U-City 건설 등)에 관한 사항 67. U-도시통합운영센터 건설에 관한 사항 68.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9. 정보통신망(유선, 무선, 센서망 등)고도화에 관한 사항 70.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1. U-Service 개발 및 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72.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

직속기관(보건소) 사무분장표 (제10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건행정과	1. 공인관리 2. 당직근무 및 소내의 복무관리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임계약직 고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보건지소에 관한 사항 6.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 공사도급, 용역,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상경비 교부에 관한 사항 13. 보건소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15. 전임계약직,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보건통합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8. 차량 및 전산 관리 19. 민원서류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0. 보건사업 통합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1. 각종문서 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2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3. 일반진료(양·한방, 방사선,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4. 진료비청구 및 기타 수가의 징수 25. 노인장기요양보험청구에 관한 사항 26. 방사선 검사에 관한 사항(골다공증, X-Ray 등) 27.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8. 물리치료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건행정과	29. 휠체어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1. 약사법에 의한 개설등록(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33.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4.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6.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8.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9. 명절연휴 진료대책에 관한 사항 40.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1. 구강보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2. 치과진료에 관한 사항 43.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사항 44.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5.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6. 소독업소 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7. 감염병관리대책수립 및 예방 홍보 사업 48. 레지오넬라증 관리에 관한 사항 49.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대책 수립 50.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1. 해외유입감염병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SARS, AI 등) 52. 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53. 방역소독업무에 관한 사항 54. 방역 소독 약품 및 기자재 관리 55.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56. 감염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57. 식중독 검사에 관한 사항 58.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에 관한 사항 59. 결핵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60.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61.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2. 생화학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1.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수립에 관한사항 2. 일상경비 지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6.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문서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도시에 관한 업무 11. 건강증진서비스분야 ISO9001인증에 관한 사항 12. 건강관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4.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체력측정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체력단련실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18.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간접흡연예방에 관한 사항 21. 금연법령이행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2. 금연구역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23. 흡연자의 금연지원에 관한 사항 2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25.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알코올 사회복귀이용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7. 알코올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28.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0.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1.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2.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3. 치매보호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4.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치매조기검진관리에 관한 사항 3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관한 사항 37. 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8. 임산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9. 난임부부 관리에 관한 사항 4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41. 임산부 및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42.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43.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44. 영유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46. 산후조리원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7.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사항 48.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9.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50.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1.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52. 신생아 난청조기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3.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관한사항 54.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55. 심·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 56.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57.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상설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8.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등록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69. 방문보건대상자 보건소 내·외 연계서비스 제공관련 사항 60.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61. 재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 62.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6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6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5.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6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67.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8.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사항 70.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1. 만 12세 아동 일본뇌염 및 Td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2.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관한 사항 73.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4.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송도보건지소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3. 예산·회계관리 4. 차량 및 청사관리 5. 의료장비 등 비품 및 소모품 관리 6. 예방접종 예진 및 만성질환자 1차 진료 7. 만성질환사업에 관한 사항 8.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0. 물리치료 및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2.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3.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및 성인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5. 보건통계 및 교육 홍보 16.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별표 3】

사업소 사무 분장표(제12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연수 청학도서관	1.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 계획 및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기획·운영 나. 도서관 견학 및 이용교육 다. 독서대회, 전시회, 강연회 운영 등 5. 타 도서관 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장서 및 이용 통계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원봉사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조인력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예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업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설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 15. 자료 선정(구입, 기증) 및 수집, 정리에 관한 사항 16.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이관에 관한 사항 17. 자료의 수리 및 배가,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8.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 19. 신착·희망·예약·연체·분실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연수 청학도서관	20. 도서 상호대차 및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21. 통합도서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독서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운영 관련 장비 및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도서관 전산 보안에 관한 사항 27. 도서관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8. 도서관 당직근무 및 도서관 내의 복무관리 29. 도서관관련 사무의 보조금 교부 및 결정통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30.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사항 31.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32. 도서관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도서관 예산운영, 공사도급, 운영,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34. 무기계약 및 시간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35. 도서관 소관 차량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36.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변경등록·폐관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개정 이유 ○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송도보건지소 설치, 소득세 독립세 전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의거 공무원의 증원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현황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증 감	17	8	△1	5	1	4
현 행	641	447	17	43	12	122
개정(안)	658	455	16	48	13	126

- 직급별 조정현황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증 감	17	-	17	-	2	2	9	4	-
현 행	641	1	640	5	45	142	208	188	52
개정(안)	658	1	657	5	47	144	217	192	52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4.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3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도서관)	동
합계	658	455	16	48	13	126
정무직	1	1				
일반직	657	454	16	48	13	126
3급	1	1				
행정	1	1				
4급	4	3		1		
행정	2	2				
기술	2	1		1		
5급	47	24	3	7	1	12
행정	26	14	3			9
의무	4			4		
시설	2	2				
행정 · 사회복지	3	2				1
행정 · 사서	1				1	
행정 · 녹지	2	1				1
행정 · 보건	2	1		1		
행정 · 환경	2	2				
행정 · 시설	3	2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2			2		
6급	144	108	4	12	3	17
행정	68	49	4		1	14
세무	6	6				
사회복지	3	3				
전산	1	1				
공업	1	1				
녹지	2	2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도서관)	동
보건	5	3		2		
간호	2			2		
환경	1	1				
시설	11	11				
의료기술	1			1		
운전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7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4	3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7급	217	155	5	16	5	36
행정	86	53	4		3	26
세무	20	20				
사회복지	23	14				9
전산	6	5			1	
사서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도서관)	동
공업	7	7				
녹지	3	3				
보건	8	4		4		
의료기술	4			4		
간호	6			6		
환경	5	5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운전	7	6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	7	6				1
행정 · 세무	1	1				
행정 · 사회복지	2	2				
행정 · 환경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8급	192	135	4	11	3	39
행정	84	53	4	2		25
세무	8	8				
사회복지	13	5				8
전산	6	6				
사서	1				1	
방호	1	1				
공업	9	8			1	
녹지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2			2		
간호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도서관)	동
환경	3	3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운전	7	4		3		
기계운영	0	0				
사무운영	7	5	0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2	2				
녹지・시설	1	1				
행정・환경	3	3				
행정・보건	1	1				
9급	52	28		1	1	22
행정	20	6				14
세무	1	1				
사회복지	10	6				4
전산	0	0				
사서	1				1	
녹지	1	1				
보건	1	1				
시설	2	2				
환경	1	1				
운전	2	1		1		
사무운영	1	1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2	2				
행정・공업	1	1				

【붙임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합계	641	447	17	43	12	122
정무직	1	1				
일반직	640	446	17	43	12	122
3급	1	1				
행정	1	1				
4급	4	3		1		
행정	2	2				
기술	2	1		1		
5급	45	24	3	5	1	12
행정	26	14	3			9
의무	3			3		
시설	2	2				
행정 · 사회복지	3	2				1
행정 · 사서	1				1	
행정 · 녹지	2	1				1
행정 · 보건	2	1		1		
행정 · 환경	2	2				
행정 · 시설	3	2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6급	142	107	4	11	3	17
행정	69	50	4		1	14
세무	5	5				
사회복지	3	3				

【별 표】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합계	658	455	16	48	13	126
정무직	1	1				
일반직	657	454	16	48	13	126
3급	1	1				
행정	1	1				
4급	4	3		1		
행정	2	2				
기술	2	1		1		
5급	47	24	3	7	1	12
행정	26	14	3			9
의무	4			4		
시설	2	2				
행정 · 사회복지	3	2				1
행정 · 사서	1				1	
행정 · 녹지	2	1				1
행정 · 보건	2	1		1		
행정 · 환경	2	2				
행정 · 시설	3	2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2			2		
6급	144	108	4	12	3	17
행정	68	49	4		1	14
세무	6	6				
사회복지	3	3				

현 행						
기관별 /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전산	1	1				
공업	1	1				
녹지	2	2				
보건	5	*4*		*1*		
간호	2			2		
환경	1	1				
시설	11	11				
의료기술	1			1		
운전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2*				
행정・전산	*0*	*0*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7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4	3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개 정 안						
기관별 /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전산	1	1				
공업	1	1				
녹지	2	2				
보건	5	*3*		*2*		
간호	2			2		
환경	1	1				
시설	11	11				
의료기술	1			1		
운전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7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4	3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7급	208	146	6	15	5	36	7급	217	155	5	16	5	36
행정	83	48	5		3	27	행정	86	53	4		3	26
세무	19	19					세무	20	20				
사회복지	20	11				9	사회복지	23	14				9
전산	6	5			1		전산	6	5			1	
사서	1				1		사서	1				1	
공업	7	7					공업	7	7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8	4		4			보건	8	4		4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간호	6			6			간호	6			6		
환경	5	5					환경	5	5				
시설	20	20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운전	7	6	1				운전	7	6	1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	8	8				0	사무운영	7	6				1
행정 · 세무	1	1					행정 · 세무	1	1				
행정 · 사회복지	2	2					행정 · 사회복지	2	2				
행정 · 환경	2	2					행정 · 환경	2	2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0			0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1			1		
8급	188	136	4	9	3	36	8급	192	135	4	11	3	39
행정	87	57	3	1		26	행정	84	53	4	2		25
세무	7	7					세무	8	8				
사회복지	7	2				5	사회복지	13	5				8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전산	5	5					전산	6	6				
사서	1				1		사서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9	8			1		공업	9	8			1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6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간호	1			1			간호	1			1		
환경	3	3					환경	3	3				
시설	21	21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운전	7	5		2			운전	7	4		3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0	0				
사무운영	7	5	1			1	사무운영	7	5	0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1	1				
행정・환경	3	3					행정・환경	3	3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9급	52	29		2	0	21	9급	52	28		1	1	22
행정	20	7				13	행정	20	6				14
세무	0	0					세무	1	1				
사회복지	10	6				4	사회복지	10	6				4
전산	1	1					전산	0	0				
사서	0				0		사서	1				1	
녹지	1	1					녹지	1	1				
보건	1	1					보건	1	1				
시설	2	2					시설	2	2				
환경	1	1					환경	1	1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기관별 /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운전	*3*	1		*2*			운전	*2*	1		*1*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	☐ 개정 이유 ○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송도보건지소 설치, 소득세 독립세 전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의거 공무원의 증원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조정 - 구본청 부서별 정원 조정 (안 별표 1) -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 조정 (안 별표 2) -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 조정 (안 별표3) - 사업소에 두는 정원 조정 (안 별표4)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별표 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4.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5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별표3,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454	
기획예산실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8	행정7, 시설1
		8급	3	행정2, 전산1
		9급	-	
감사실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개방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3	행정3
		8급		
		9급		
홍보미디어실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1, 전산1, 사무운영1, 행정·전산1
		7급	5	행정1, 전산4
		8급	4	행정1, 전산2, 사무운영1
		9급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총무과	계		24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3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8	행정7, 사무운영1
		8급	5	행정4, 운전1
		9급	1	행정1
교육지원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8급	4	행정4(임기제 1명 포함)
		9급		
문화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4	행정3, 운전1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재무회계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운전1, 시설·공업1
		7급	11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3, 운전2, 사무운영1
		8급	2	행정1, 공업1
		9급		
세무과	계		45	
	일반직	소계	45	
		5급	1	행정1
		6급	10	세무6, 행정·세무3, 사무운영1
		7급	18	세무18
		8급	13	행정2,전산1, 세무8, 행정·세무2
		9급	3	행정·세무2, 세무1
민원지적과	계		32	
	일반직	소계	32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7급	10	행정6(임기제 1명 포함), 시설4
		8급	14	행정7, 시설5, 전산1, 운전1
		9급	1	행정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복지정책과	계		36	
	일반직	소계	36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7급	13	행정3, 사회복지9, 운전1
		8급	12	행정4,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3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가정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7급	6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8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2, 보건1
		9급	2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지역경제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공업1
		7급	3	행정1, 공업2
		8급	3	행정1, 공업2
		9급	1	행정·공업1
일자리창출과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청소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환경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6	행정2, 환경2, 운전1 행정·환경1
		8급	3	행정1, 환경1, 사무운영1
		9급	1	행정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위생관리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보건1
		6급	4	보건3, 행정·보건1
		7급	4	보건4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과	계		29	
	일반직	소계	29	
		4급	1	기술1
		5급	1	시설1
		6급	7	행정2,시설3, 기계운영1, 시설·공업1
		7급	12	행정2, 시설5, 공업1, 운전1, 전기운영1, 기계운영2
		8급	7	시설5, 공업2
		9급	1	운전1
건축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시설1
		6급	4	행정·시설1, 시설3
		7급	5	시설3, 기계운영1, 사무운영1
		8급	6	시설5, 사무운영1
		9급	2	시설2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도시계획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7급	5	행정1, 시설3, 공업1
		8급	5	행정1, 시설3, 사무운영1
		9급		
환경보전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8급	8	행정2,환경2, 사무운영1, 행정·환경3
		9급	2	행정1, 환경1
공원녹지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녹지1
		6급	3	녹지2, 시설·녹지1
		7급	4	녹지3, 공업1
		8급	9	행정2 , 녹지3 시설·녹지1, 공업1, 방호1, 운전1
		9급	1	녹지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교통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공업1
		7급	2	행정2
		8급	7	행정4, 공업1, 시설2
		9급	1	행정1
차량민원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7	행정2, 세무2, 사무운영2, 행정·세무1
		8급	7	행정6, 운전1
		9급	1	사무운영1
안전관리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방송통신1
		7급	6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 2
		8급	5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2
		9급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의 회		계	16	
	일반직	소계	16	
		5 급	3	행정3
		6 급	4	행정4
		7 급	5	행정4, 운전1
		8급	4	행정4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3항 관련)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48	
보건행정과	계		26	
	일반직	소계	26	
		4급	1	기술1
		5급	4	의무3(임기제), 행정·보건1
		6급	5	행정·보건1, 의료기술1(임기제),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급	9	보건3,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3, 간호2
		8급	7	행정1,보건1,의료기술2, 운전3
		9급		
건강증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5	보건1,간호1,보건·의료기술1,약무·간호1,보건·간호1
		7급	5	간호4, 보건1
		8급	3	보건2, 간호1
		9급	1	운전1
송도보건지소	계		7	
	일반직	소계	7	
		5급	2	의무1(임기제),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2	보건1,간호1,
		7급	2	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1
		8급	1	행정1
		9급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4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도서관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서1
		6급	3	행정·사서1, 행정·시설1, 행정1
		7급	5	행정3, 전산1, 사서1,
		8급	3	사서1, 공업1, 행정·사서1
		9급	1	사서1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 5항 관련)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126	
옥련1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사무운영1
		9급	1	행정1
옥련2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선학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무운영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연수1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연수2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3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청학동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녹지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춘1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2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춘3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송도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송도2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2	행정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 원	직 렬
합 계			430	
기획예산실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7	행정6, 시설1
		8급	3	행정2, 전산1
		9급	-	
감사실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개방1)
		6급	5	행정4, 행정·시설1
		7급	2	행정2
		8급		
		9급	1	행정1
홍보미디어실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전산1
		7급	6	행정1, 전산4, 사무운영1
		8급	3	행정1, 전산1, 사무운영1
		9급	1	전산1

개 정 안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 원	직 렬
합 계			454	
기획예산실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8	행정7, 시설1
		8급	3	행정2, 전산1
		9급	-	
감사실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개방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3	행정3
		8급		
		9급		
홍보미디어실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1, 전산1, 사무운영1, 행정·전산1
		7급	5	행정1, 전산4
		8급	4	행정1, 전산2, 사무운영1
		9급		

현 행					개 정 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총무과	계		24		총무과	계		24	
	정무직		1	구청장1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3			일반직	소계	23	
		3급	1	행정1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7	행정6, 사무운영1			7급	8	행정7, 사무운영1
		8급	7	행정6, 운전1			8급	5	행정4, 운전1
		9급					9급	1	행정1
교육지원과	계		11		교육지원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7급	3	행정3
		8급	4	행정4(임기제 1명 포함)			8급	4	행정4(임기제 1명 포함)
		9급					9급		
문화체육과	계		13		문화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3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6급	5	행정5
		7급	5	행정4, 운전1			7급	4	행정3, 운전1
		8급	3	행정3			8급	4	행정4
		9급					9급	1	행정1

현 행					개 정 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재무회계과	계		21		재무회계과	계		19	
	일반직	소계	21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운전1, 시설·공업1			6급	5	행정3, 운전1, 시설·공업1
		7급	12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4, 운전2, 사무운영1			7급	11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3, 운전2, 사무운영1
		8급	3	행정1, 공업1, 운전1			8급	2	행정1, 공업1
		9급	-				9급		
세무과	계		41		세무과	계		45	
	일반직	소계	41			일반직	소계	45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8	세무5, 행정·세무3			6급	10	세무6, 행정·세무3, 사무운영1
		7급	17	세무17			7급	18	세무18
		8급	13	행정3, 전산1, 세무7, 행정·세무2			8급	13	행정2, 전산1, 세무8, 행정·세무2
		9급	2	행정·세무2			9급	3	행정·세무2, 세무1
민원지적과	계		32		민원지적과	계		32	
	일반직	소계	32			일반직	소계	32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7급	9	행정5(임기제 1명 포함), 시설4			7급	10	행정6(임기제 1명 포함), 시설4
		8급	15	행정8, 시설4, 전산1, 운전1, 사무운영1			8급	14	행정7, 시설5, 전산1, 운전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현 행					개 정 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복지정책과	계		30		복지정책과	계		36	
	일반직	소계	30			일반직	소계	36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6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7급	12	행정4, 사회복지6, 운전1, 사무운영1			7급	13	행정3, 사회복지9, 운전1
		8급	7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8급	12	행정4,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3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과	계		19		사회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9급	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가정복지과	계		19		가정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6급	4	행정·사회복지4
		7급	6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8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2, 보건1			8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2, 보건1
		9급	2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9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현 행					개 정 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지역경제과	계		11		지역경제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공업1			6급	3	행정2, 공업1
		7급	3	행정1, 공업2			7급	3	행정1, 공업2
		8급	3	행정1, 공업2			8급	3	행정1, 공업2
		9급	1	행정·공업1			9급	1	행정·공업1
일자리창출과	계		8		일자리창출과	계		8	
	일반직	소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6급	3	행정3
		7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9급		
청소행정과	계		14		청소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환경1			5급	1	행정·환경1
		6급	4	행정2, 사무운영1, 행정·환경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6	행정2, 환경2, 운전1 행정·환경1			7급	6	행정2, 환경2, 운전1 행정·환경1
		8급	2	행정1, 환경1			8급	3	행정1, 환경1, 사무운영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현 행					개 정 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위생관리과	계		16		위생관리과	계		15	
	일반직	소계	16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보건1			5급	1	행정·보건1
		6급	5	보건4, 행정·보건1			6급	4	보건3, 행정·보건1
		7급	4	보건4			7급	4	보건4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과	계		29		건설과	계		29	
	일반직	소계	29			일반직	소계	29	
		4급	1	기술1			4급	1	기술1
		5급	1	시설1			5급	1	시설1
		6급	7	행정2,시설3, 기계운영1, 시설·공업1			6급	7	행정2,시설3, 기계운영1, 시설·공업1
		7급	9	행정1, 시설4, 공업1, 운전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7급	12	행정2, 시설5, 공업1, 운전1, 전기운영1, 기계운영2
		8급	9	행정1, 시설5, 공업2, 기계운영1			8급	7	시설5, 공업2
		9급	2	행정1, 운전1			9급	1	운전1
건축과	계		18		건축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시설1			5급	1	시설1
		6급	4	행정·시설1, 시설3			6급	4	행정·시설1, 시설3
		7급	5	시설3, 기계운영1, 사무운영1			7급	5	시설3, 기계운영1, 사무운영1
		8급	6	시설5, 사무운영1			8급	6	시설5, 사무운영1
		9급	2	시설2			9급	2	시설2

현 행					개 정 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도시계획과	계		14		도시계획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6급	3	행정1, 시설2
		7급	4	행정1, 시설2, 공업1			7급	5	행정1, 시설3, 공업1
		8급	6	행정1, 시설4, 사무운영1			8급	5	행정1, 시설3, 사무운영1
		9급					9급		
환경보전과	계		21		환경보전과	계		20	
	일반직	소계	21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환경1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6급	5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8급	8	행정2,환경2, 사무운영1, 행정·환경3			8급	8	행정2,환경2, 사무운영1, 행정·환경3
		9급	3	행정2, 환경1			9급	2	행정1, 환경1
공원녹지과	계		18		공원녹지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녹지1			5급	1	행정·녹지1
		6급	3	녹지2, 시설·녹지1			6급	3	녹지2, 시설·녹지1
		7급	4	녹지3, 공업1			7급	4	녹지3, 공업1
		8급	9	행정2,녹지3,시설·녹지1, 공업1, 방호1, 운전1			8급	9	행정2,녹지3,시설·녹지1, 공업1, 방호1, 운전1
		9급	1	녹지1			9급	1	녹지1

현 행					개 정 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교통행정과	계		14		교통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공업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공업1
		7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7	행정4, 공업1, 시설2			8급	7	행정4, 공업1, 시설2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차량민원과	계		19		차량민원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6급	3	행정3
		7급	6	행정1, 세무2, 사무운영2, 행정·세무1			7급	7	행정2, 세무2, 사무운영2, 행정·세무1
		8급	8	행정7, 운전1			8급	7	행정6, 운전1
		9급	1	사무운영1			9급	1	사무운영1
안전관리과	계		15		안전관리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방송통신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방송통신1
		7급	6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 2			7급	6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 2
		8급	5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2			8급	5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2
		9급					9급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2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의회	계		17	
	일반직	소계	17	
		5 급	3	행정3
		6 급	4	행정4
		7 급	6	행정5, 운전1
		8급	4	행정3, 사무운영1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2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의회	계		16	
	일반직	소계	16	
		5 급	3	행정3
		6 급	4	행정4
		7 급	5	행정4, 운전1
		8급	4	행정4

현 행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43	
보건행정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4급	1	기술1
		5급	4	의무3(임기제), 행정·보건1
		6급	5	행정·보건1, 의료기술1(임기제),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급	10	보건3,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4 간호2
		8급	6	행정1,보건1,의료기술2, 운전2
		9급	1	운전1
건강증진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6	보건1,간호2,보건·의료기술1, 약무·간호1,보건·간호1
		7급	5	간호4 보건1
		8급	3	보건2, 간호1
		9급	1	운전1

개 정 안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48	
보건행정과	계		26	
	일반직	소계	26	
		4급	1	기술1
		5급	4	의무3(임기제), 행정·보건1
		6급	5	행정·보건1, 의료기술1(임기제),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급	9	보건3,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3, 간호2
		8급	7	행정1,보건1,의료기술2, 운전3
		9급		
건강증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5	보건1,간호1,보건·의료기술1, 약무·간호1,보건·간호1
		7급	5	간호4, 보건1
		8급	3	보건2, 간호1
		9급	1	운전1
송도보건지소	계		7	
	일반직	소계	7	
		5급	2	의무1(임기제),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2	보건1,간호1,
		7급	2	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1
		8급	1	행정1
		9급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4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도서관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서1
		6급	3	행정·사서1, 행정·시설1, 행정1
		7급	5	행정3, 전산1, 사서1,
		8급	3	사서1, 공업1, 행정·사서1
		9급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4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도서관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서1
		6급	3	행정·사서1, 행정·시설1, 행정1
		7급	5	행정3, 전산1, 사서1,
		8급	3	사서1, 공업1, 행정·사서1
		9급	1	사서1

현 행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5항 관련)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122	
옥련1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사무운영1
		9급	1	행정1
옥련2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선학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연수1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개 정 안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5항 관련)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126	
옥련1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사무운영1
		9급	1	행정1
옥련2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선학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무운영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연수1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현 행					개 정 안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연수2동	계		12		연수2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3동	계		11		연수3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청학동	계		13		청학동	계		13	
	일반직	소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녹지1			5급	1	행정·녹지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춘1동	계		9		동춘1동	계		9	
	일반직	소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9급		

현 행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2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행정·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춘3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송도1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송도2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개 정 안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2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춘3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송도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송도2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2	행정2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21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점명	세계측지계		중부좌표		가리좌표		비고
	X	Y	X	Y	X	Y	
2739	536892.014	173367.710	436586.04	173297.40	353.19	-14889.30	신설
2740	536967.274	173360.310	436661.29	173290.00	428.42	-14896.82	신설
2741	536972.657	173451.210	436666.67	173380.90	433.95	-14805.93	신설
2742	536978.380	173525.599	436672.39	173455.29	439.79	-14731.55	신설
2743	536998.182	173527.864	436692.19	173457.55	459.59	-14729.32	신설
2744	537046.379	173511.743	436740.38	173441.43	507.75	-14745.52	신설
2745	537076.728	173621.898	436770.73	173551.59	538.26	-14635.41	신설
2746	537156.739	173745.990	436850.73	173675.68	618.44	-14511.43	신설
2747	537135.233	173791.990	436829.22	173721.68	597.00	-14465.40	신설
2748	537147.729	173993.651	436841.72	173923.33	609.81	-14263.75	신설
2749	536952.130	173931.676	436646.14	173861.36	414.15	-14325.42	신설
2750	536944.121	173861.132	436638.13	173790.82	406.03	-14395.96	신설
2751	536978.000	173789.965	436672.01	173719.65	439.81	-14467.18	신설
2752	536952.472	173656.270	436646.48	173585.96	414.07	-14600.84	신설
2753	536963.110	173552.041	436657.12	173481.73	424.55	-14705.08	신설
2754	536919.717	173442.675	436613.74	173372.36	381.00	-14814.38	신설
2755	536731.696	173377.158	436425.73	173306.85	192.91	-14879.60	신설
2756	536724.840	173524.860	436418.87	173454.55	186.28	-14731.89	신설
2757	536686.343	173623.118	436380.37	173552.81	147.94	-14633.57	신설
2758	536617.231	173686.389	436311.26	173616.08	78.92	-14570.19	신설
2759	536551.030	173717.154	436245.06	173646.84	12.76	-14539.32	신설
2760	536567.517	173862.483	436261.55	173792.17	29.47	-14394.02	신설
2761	536654.933	173869.905	436348.96	173799.59	116.89	-14386.73	신설
2762	536774.592	173866.722	436468.61	173796.41	236.53	-14390.10	신설
2763	535978.940	172640.885	435673.16	172570.60	-560.66	-15614.74	신설

기준점의 명칭	지적도근점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세계측지계, 중부좌표, 가리좌표
토지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설치일	2013. 12. 30.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20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02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통해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등 기본 사항

❍ 책무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협의회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 회의 및 수당 등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 관련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03. 1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185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붙임1) 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연수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등
2. 위촉직위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연수경찰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민주평활통일자문회의 연수구협의회·연수구자원봉사센터·세화종합사회복지관·인천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부서 책임자,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직업교육,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20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정이유

- 최근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공식 피드백 채널이 부족함.

- 따라서 구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구정 모니터단」을 도입하여, 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신뢰 구축 및 연수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니터의 정의(안 제2조)

- 구정발전 및 구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자

나. 모니터의 역할(안 제4조)

-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구정운영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 미담 수범사례,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다. 모니터 위·해촉 및 임기(안 제5조 ~ 제7조)

라. 모니터 운영 및 활동지원, 비용 보상 등 (안 제8조 ~ 제10조)

마. 모니터 준수사항 및 관련 정보의 보호(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전화 : 032-749-7084, FAX : 032-749-7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연수구 구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발전 및 구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안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구정운영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제5조(위촉 등) ① 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화된 모니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등 전문분야 이수자들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밖에 타 구로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가 조사·제보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등) ① 구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모니터 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보대상의 발견 시 가급적 보고
2. 모니터로서의 품위유지
3. 모니터 외의 업무 간섭 금지
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자세유지

제12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20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모니터의 자격 세부기준(안 제2조)
나. 모집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다. 모니터의 관리 및 신분증 사용(안 제4조 ~ 제5조)
라. 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안 6조)
마.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전화 : 032-749-7084, FAX : 032-749-7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연수구 구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전문화된 모니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연수구(이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구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제3조(모집방법 및 절차) ① 모니터는「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니터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구 구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모니터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니터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 사용) ① 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는 훼손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분실 신청(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모니터를 해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제6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모니터 업무담당 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니터의 보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14. . . 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연수구 구정모니터 실비 보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증

〔별지〕 【제5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분실] 신청(고)서

〔별지〕 【제6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

■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연수구 구정모니터 실비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 금액	비 고
비지정과제 모니터링 보상금 (제안·아이디어 등)	· 건별 10,000원	채택될 경우
지정과제 모니터링 보상금	· 과제수행 시 30,000원	
우수모니터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 등)	· 시기 : 분기별 · 기준 :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내 실비 지원	

■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지원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화번호 :　　휴대폰 :

4. 이 메 일 :

5. 생년월일 :

6. 직　　업 :

7. 신청사유 :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직업

■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관리대장

연번	위촉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메일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직업	해촉일

■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증

< 앞 면 >

NO. 2014-01

연수구 구정모니터

사 진
3.5㎝×4.5㎝
(탈모,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8cm

연수구 구정모니터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5.5cm

< 뒷 면 >

연수구 구정모니터증

성명 생년월일

이 사람은 연수구 구정모니터임을 증명함.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에 따른 구정모니터로서의 임무
- 시책 추진에 관한 주민여론 제보
-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제보
- 시책 중 시정(是正)이 필요한 사항 건의

년 월 일

<유의사항>
▸ 해촉 시에는 연수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구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분실] 신청(고)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재발급신청사유 :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모니터 신분증의 [(재)발급/분실]을 신청(고) 합니다.

붙임 : 사진1매

20　.　.　.

신청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 연수구 구정모니터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연수구 구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

관리번호		제보자		제보일시	

〔제보내용〕

○

-

처리부서		처리일시	

〔처리내용〕

○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22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03월 0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351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에 따른 위임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목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 위원회의 개최, 위원의 의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 위원회의 회의진행, 의견청취, 안건상정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03.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 연 락 처 : 전화 749-8713　FAX 749-8869
-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1) 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관리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련 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④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산림)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16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